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순 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2건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고자 : 표주숙 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4건
- 보고자 : 신미정 위원장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5건
- 보고자 : 김향란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0건
- 보고자 : 최준규 위원장



의 사 일 정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2. 11.(수)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5. 거창군의회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9.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7.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19.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 2 ※ 의회운영위원회 3 ~ 6 ※ 총무위원회 7 ~ 21

부 의 안 전	비 고
20.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22.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25.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6.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31. 거창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2. 휴회의 건 【산 회】	※ 산업건설위원회 22 ~ 31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경과	1
2. 세입예산안 대비표	1
3. 세출예산안 대비표	2
4. 심사결과	3
5. 변동조서	3
6. 조건부 승인조서	3

II .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경과	4
2. 제안사유	4
3. 근거법령	4
4. 기금운용 변경계획	5
5. 질의 및 답변 요지	6
6. 토론 요지	6
7. 수정안 요지	6
8. 심사결과	6
9. 소수의견 요지	6
10. 기타 필요한 사항	6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라.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2. 10. 상정·의결)

2. 세입예산안 대비표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9,598,065	820,682,401	△1,084,336	△0.1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소 계	780,209,456	780,483,792	△274,336	△0.04
	지방세수입	40,397,397	40,397,397	0	0.00
	세외수입	28,781,551	20,273,436	8,508,115	41.97
	지방교부세	322,319,000	331,219,000	△8,900,000	△2.69
	조정교부금등	30,966,000	32,108,000	△1,142,000	△3.56
	보조금	245,941,716	245,318,118	623,598	0.25
	보존수입등내부거래	111,803,792	111,167,841	635,951	0.57
공기업특별회계		39,388,609	40,198,609	△810,000	△2.01

3. 세출예산안 대비표

가.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819,598,065	820,682,401	△1,084,336	△0.13
일반회계	765,409,758	766,329,490	△919,732	△0.12
특별회계	54,188,307	54,352,911	△164,604	△0.30
기 타	14,799,698	14,154,302	645,396	4.56
공기업	39,388,609	40,198,609	△810,000	△2.01

나. 위원회 및 회계별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9,598,065	820,682,401	△1,084,336	△0.13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소 계	780,209,456	780,483,792	△274,336	△0.04
	의회운영위원회	1,231,070	1,231,070	0	0.00
	총 무 위 원 회	426,146,034	420,263,985	5,882,049	1.40
	산업건설위원회	352,832,352	358,988,737	△6,156,385	△1.7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9,388,609	40,198,609	△810,000	△2.01

4. 심사 결과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나.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1건에 대해 481,910천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5. 변동 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정 책	단 위	세 부					
농업 기술과	농업 소득 인프라 구축	고식미 생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301-14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2,035,800	▲481,910	1,553,890	확정 사업비 반영

6. 조건부 승인조서

- 세입예산안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4. 11. 2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라.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2. 10. 상정·의결)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4.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변경(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24년도말 조성액 e=d+ a
		수 입 (b)	지 출 (c)	증감 d=b-c	
계	80,838,769	43,700,589	61,000,000	△17,299,411	63,539,358
재정안정화계정	68,135,313	43,279,497	60,000,000	△16,720,503	51,414,810
통합계정	12,703,456	421,092	1,000,000	△578,908	12,124,548

-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변경 (3회 추정)	당초 (2회추경)	증감	항목	변경 (3회 추정)	당초 (2회추경)	증감
합 계	124,539,358	83,442,928	41,096,430	합 계	124,539,358	83,442,928	41,096,430
전 입 금	41,000,000	-	41,000,000	예 치 금	63,539,358	22,442,928	41,096,430
예 치 금 회 수	80,838,769	80,838,769	-	기타지출	60,000,000	60,000,000	-
이자수입	2,700,589	2,604,159	96,430	예 수 금	1,000,000	1,000,000	-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a)	'24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예치금	농협	134,763,067	80,838,769	63,539,358	△17,299,411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



거 창 군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
2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9
3	거창군의회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안	14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1. 22.

나. 발 의 자: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재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완수, 친절·공정(안 제1조 ~ 제5조)
- 2) 당직및비상근무, 휴식권보장, 겸임근무, 파견근무
(안 제6조 ~ 제9조)
- 3) 복장 및 신분증,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안 제10조~ 제11조)

- 4)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휴가기간의 초과, 국외여행
(안 제12조 ~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2022.1.13.)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거창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임.
- 아울러 본 조례안은 기존에 적용됐던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용하여 제정되어,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간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였음.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본 안건은 적법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휴식권 보장) ①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회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공무원이 연가신청을 한 때에는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의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
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
근으로 본다.

제15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
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와
의장”을 “군수”로 한다.

제13조제6호 중 “군수와 의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군수와 거창군의회 부의장”을 “부군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항, 2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와 의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심사보고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1. 22.

나. 발 의 자: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11명)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재운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1조, 제2조)
- 2) 당직구분(안 제3조)
 - 당직, 일직, 숙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3) 당직근무자의 편성(안 제4조)

- 당직근무자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고 재택근무 환경 마련

4) 당직명령 및 변경 및 당직 수당(안 제5조, 제6조)

-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명령 후 통지

5) 재택당직근무 (안 제7조)

6)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안 제8조)

7)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안 제9조)

8) 비상근무 일지 등 전자적 관리(안 제10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의 위임규정 및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에서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1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고 한다)이 발령하고 사전에 당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의회의 방법·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전화민원의 응대

- ②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의장,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거창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전자적 관리) 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의회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1. 22.

나. 발 의 자: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11명)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흥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거창군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2) 홍보활동의 원칙 및 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3조·제4조)
- 3) 홍보매체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
- 4) 의정소식지의 발행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5) 홍보영상 제작 및 누리집 운영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제12조)

- 6) 자료의 관리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 7) 이용자 참여행사에 대해 정함(안 제14조)
- 8)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정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거창군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정 정보 등을 거창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매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누리집·누리소통매체 등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회의”란 의회 본회의,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3. 누리집 개설 및 운영
4. 누리소통매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도정·군정·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 ①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거창군의회 의정소식(이하 “거창의정”으로 한다)으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 ② 거창의정은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거창의정은 무상으로 배부한다.
- ④ 거창의정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은 의장이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거창의정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거창의정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홍보영상 제작)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회 주요정책, 행정정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누리집 개설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② 의장은 의회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에 회의 등 의정활동을 군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시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② 의장은 인터넷방송을 누리소통매체를 통해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누리소통매체 운영) ① 의장은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누리소통매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누리소통매체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누리소통매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누리소통매체에 송출 게시한다.

제11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취재·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의정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의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3조(이용자 참여행사) 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홍보매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1. 22.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법령 위임 없이 긴급한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며, 통상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같은 규정을 뒤야 하나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지서식 내용 정비
 - 별지제1호서식(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과 별지제3호서식(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어 입법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맞는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행 정 과	1
2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원발의)	행 복 나 눔 과	11
3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 획 예 산 담 당 관	16
4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21
5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27
6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34
8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 구 교 육 과	38
9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기 업 과	44
10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정 책 과	48
11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행 복 나 눔 과	53
12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13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인 구 교 육 과	64
14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 무 과	69
15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문 화 관 광 과	76
16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	80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1. 22.

나. 발 의 자: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11명)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재화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가 가지고 있던 용어의 이중성 및 군의회 동의 절차의 혼란을 축소하고,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을 향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2)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3) 군의회 동의 기준을 정함(안 제5조)
- 4)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5)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8조~제14조)

- 6)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함(안 제16조)
- 7) 계약체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7조)
- 8) 운영지원의 근거를 정함(안 제19조)
- 9) 지도·감독, 감사, 성과 평가 등을 정함(안 제21조~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혼동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의회 동의 기능 강화 및 민간위탁 기간 제한, 동의안 작성내용 명시를 통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군의회 동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이라는 기간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에 제출할 서류를 정함.
 - 계약체결 내용과 민간위탁 기간을 정함(안 제5조)
‘협약’에서 ‘계약’으로 용어를 바꾸고, 민간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함. 하지만, 위탁기간 제한은 지자체마다 3년과 5년으로 상이하며, 도내에서는 산청, 창원, 통영에서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절차,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률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 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들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1. 22.

나. 발 의 자: 김향란의원 대표 발의(11명)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2)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3)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4)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5)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6)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에 맞추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써
- 거창군의 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 59,720명이고, 등록장애인은 4,961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3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행한 2023 티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 장애인 가구의 이용 가능한 PC 보유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6.2%가 낮고, ▲모바일 스마트폰 보유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6.9%가 낮음. ▲ 인터넷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일반국민 보다 3.3% 낮고, SNS나 메신저, 개인 블로그 등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은 장애인이 일반국민보다 3.3%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조사 결과와 같이 장애인과 일반인의 정보격차가 다소 있으며, 더 이상 정보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복지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쉽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전파·보급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제9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예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가. 제안이유

-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위배사항,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용어 및 인감증명서 요구사항, 여성가족부 권고 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 불부합 정비

-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개선함(안 제1조)
 - 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 2) 수탁자 등의 책임범위를 개선함(안 제1조~제3조)
 - 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 나)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 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3)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를 개선함(안 제4조)
- 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행정안전부 발굴 장애인 용어 및 인감증명서 정비(안 제5조·제6조)
 - 1)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2)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7조·제8조)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 「양성평등기본법」: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성가족부 권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조례 8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가. 감사원 감사 관련 법령 불부합 정비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수탁자 등의 책임 범위와 행정재산 원상복구 절차를 개선함.

나. 용어순화, 인감증명서 삭제,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 정비권고로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개정하고, 「거창군 지역자

을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8호 서식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인용법령을 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감사 지적사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조(「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4조(「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실명란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한다.

제6조(「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제7조(「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8조제2항제3호”를 “법 제40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윤락”을 “성매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후반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신규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기구 확대함(안 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3절)

- 1) (현행) 3국 2담당관 13과 1의회 2직속기관(5과) 3사업소 12읍면
(조정) 3국 2담당관 14과 1의회 2직속기관(6과) 4사업소 12읍면
- 2)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 3) 농업기술센터 과 신설: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 4) 거창골프장사업소 신설

나. 정원 조정함: 총수 변동 없음(안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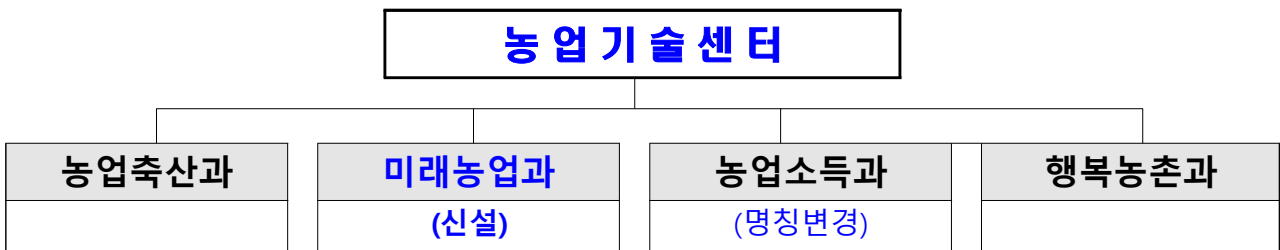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것으로써

구 분	기 구 표	비 고
당초	3국 2담당관 13과 2직속기관(5과) 3사업소 12읍면 / 167담당	
개편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기관(6과) 4사업소 12읍면 / 170담당	

① 문화관광과 분리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신설)



② 농업기술센터 과 신설 : 미래농업과



③ 거창골프장사업소 신설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제27조,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총계는 기존의 796명으로 변동없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행정기구 개편은 지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거창군의 문화, 예술, 농업, 체육 등 전반적으로 군민과 밀접한 업무임에도 입법예고 기간이 4일 밖에 되지 않음.
-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사·중복업무 통합, 쇠퇴 업무 인력 감축, 군정 대형사업, 신규사업, 핵심사업 등을 위주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신설된 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제4호를 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화정책, 예술진흥, 축제,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 관광산업·치유산업, 관광마케팅, 수송대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CCTV 관제”를 “CCTV 관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업기술과”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로 한다.

“제3절 거창사건사업소”를 “제4절 거창사건사업소”로 하고
제3절(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거창골프장사업소

제18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골프장사업소를 둔다.

② 거창골프장사업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에 둔다.

제18조의3(소장) 거창골프장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의4(소관사무) 거창골프장사업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골프장 운영 계획 수립, 경영목표 관리에 관한 사항
2. 골프장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골프장 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계		796								
정무직		1								
일 반 직	소계	760 759								
	3급	1	1							
	4급	4	3		1		1			
	5급	42 39	16 15	3	7 6	5 4	2	4 3	1	11
	6급 이하	713 715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연구직 (연구사)		7								
지도직 (지도사)		27 28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 10. 시행)됨에 따라 위임근거 및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1) 위임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 폐지

2)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실효성이 없어 모두 폐지됨

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안 제3조)

나) 자치분권협의회(현행 제6조~제11조)

(1) 협의회는 최초 신규 위촉식만 하고 회의 개최 실적 없음

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지원(안 제12조)

(1) 자치분권 촉진사업을 하는 기관·단체가 없어 지원 실적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9430호로 2023년 7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이 폐지된 조례임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제정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이장의 고령화·임기 등 현실태에 맞게 장학금 선발 조건을 확대·완화하여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정비함(안 제2조의2)

(현행)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이장

(변경) 이장

다. 법령 재기재 등 정비함(안 제3조, 제6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 학생 수 감소, 이장의 고령화, 임기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장의 근속연수 및 경력을 삭제하여 수혜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
 -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근거 신설(제2조)
 - 장학생의 자격 완화(제2조의2)
 - ↳ 2년 이상 근속 조건 삭제
 - 법령 재 기재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8조)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년 3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97.3%)가 운영 중임.
- 또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는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통·리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고 있음.
- 하지만, 지급 대상, 선발 기준·과정 등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상의 미비점도 있으며, 경남도내의 경우 고성군과 창녕군은 ‘1년 이상 근속’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근속 규정 없이 ‘이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자녀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종전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이장자녀 장학금”을 “제2조에 따른 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을 “거창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학”을 “재학(정학 및 휴학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를 “제2조의2”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군수는 제1항에도”로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로 한다.

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조 제목 “(장학금의 지급)”을 “(지급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윤광식]

가. 제안이유

-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이장의 건강보호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주민과 행정 간의 능률과 주민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시행2023.08.03.)

제3조(지원사업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2. 이장·통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이장·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도내 지자체별 조례개정 현황(2024.11.25.기준)

시군	조례개정	시군	조례개정	시군	조례개정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의령군	×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 거창군 2024년 이장 관련 예산지원 현황

항 목	예 산 액
• 기본수당	월 40만원
• 회의참석(월 2회) 수당	1회 2만원
• 명절 상여금	연 200%
• 복지 도우미 활동수당	월 10만원
•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130,000천원
•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3,000천원
• 이장 자녀 장학금	18,100천원
•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4,000천원
• 이장 및 군민 표창패	9,900천원
• 이장 단체복 지원	5,000천원
•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30,000천원
• 모범이장 연수 및 행사참석	20,000천원

○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을 382조 4천억원으로 전망 했는데, 이는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9조원 가량 적은 수치로 그만큼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 덧붙여, 국책연구원들은 올해 세수가 예산보다 10조~20조원 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이는 지난해 ‘56조 세수뎡크’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인 상황에서, 지난 11월 4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교부세가 올해 당초 교부결정액보다 경남도는 356억원, 도내 18개 시군은 1,951억원 등 총 2,307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고 밝힘.
- 이에, 우리군의 경우 2024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7.94%에 불과하고 재원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97억원의 결손이 발생함에도 이와 같은 고정비 용을 늘리는 것은 재정 운용상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건강검진 대상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가. 제안이유

-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청년, 청년친화도시를 정의함(안 제2조)
- 2) 군수의 책무,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정함(안 제5조)
-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를 정함(안 제6조)
- 5) 기초조사 및 정책조사, 홍보 및 교육, 추진실적의 평가, 지원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2023. 3. 21. 개정된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 신설과 2023. 9. 12. 개정된 「청년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8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조항 신설에 근거하여
- 우리군의 청년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난 8월 국무조정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226개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의 지역을 5년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 지정된 도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운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19년 자체 공모사업으로 2022년까지 4개 시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한 바 있음.
- 이에, 우리군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와 함께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일회성 행사나 현금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구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구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구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구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

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현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강기대학교 재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등록금 지원 범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함(안 제4조)
 - 1) 현행)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변경)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예산 범위: 해당 경비의 지출을 위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군 회계의 세출예산에 실제 계상(計上)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를 의미(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20-000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한국승강기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의 지원 범위를 군수의 재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 지원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고등교육법 제7조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은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승강기대학과 재학생을 지원한다’는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겠으나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천억원 가까이 늘린 5조 3천여 억원으로 편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에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형평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대학 졸업 후 다시 관외로 주소를 옮기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너나없이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이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서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이나 국가장학금을 받는 청년에게는 역차별의 소지도 있음
- 승강기대학과 재학생에게 매년 338백만원이 지원되는 만큼 2024년 본예산 기준 7.94%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록금의 일부를”을 “등록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가. 제안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대행을 정함(안 제6조)
- 2) 법령 개정사항 및 불부합사항, 문장 등 정비(제1조·제2조·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도록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르면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운영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중 “군내”를 “거창군 소재”로 한다.

제4조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 종합계획”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

성을 반영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제10조 중 “자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 복지를 증진하여 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2) 군수의 책무, 세부시행계획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3) 지원사업,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정함(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거창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계청이 지난 9월에 발표한 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 20%, 36년에 30%, 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거창군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57명(2024년 10월말 기준)으로 거창군 전체인구 59,720명의 31.91%를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 ※ 국제연합(UN) 기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고령화사회 7% 이상 - 고령사회 14% 이상 - 초고령사회 20% 이상
- 또한, 군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은 50개소에 장기요양요원은 1,322명에 달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

원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필요함.

□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현황(2024년 10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비고
계		50	1,322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9	267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24	652	
	재가장기요양기관	17	403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과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노동조건과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의 향상
2.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 보호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지원센터)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가. 제안이유

- 현재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속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 미신고 경로당의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신고된 경로당으로 양성화하여 지역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제4조)
 - 1) 시설 규모, 설비 기준 등의 요건을 정함
 - 2)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에 한정하여 지원

-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정비함(안 제6조)
- 법령 재기재 사항 등 정비함(안 제7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친목도모와 여가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 신설(안 제3조)

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 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
 - 가. 읍: 10명
 - 나. 면: 7명
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
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

- 지원 품목 명시(안 제4조 제1항 제2호)

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

- 지원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고려(안 제5조)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정비(안 제6조)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불필요한 사항 삭제(안 제7조~제9조)
- 올해 제22차 민생토론회(2024.3.21.)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식사제공 단계적 확대추진 방안’에 따라 미등록경로당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제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설, 인원 등의 요건 미달로 온전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전국 1600여 개가 해당됨에 따라, 소외된 노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난방비와 양곡비, 위문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 우리군 등록 경로당 435개소, 미등록 경로당 8개소, 3회 추경 시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1,200천원 예산 편성
-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느슨한 경로당 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이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으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추5186, 판결): 안성시 의회가 의결한,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노인복지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거창군 경로당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경로당 등”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비용(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규모: 65세 이상 회원이 다음 각 목의 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
 - 가. 읍: 10명
 - 나. 면: 7명
2. 설비 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을 것
3. 개인 소유이거나 위법의 건축물이 아닐 것

제4조 조 제목 “(지원범위)”를 “(지원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로당 시설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

제5조 중 “그 운영실태”를 “노인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운영실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건강, 취미,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가. 제안이유

- 수요 맞춤형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학비 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이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 요

- 1) 근 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2) 출 연 금: 3,753백만원(증 58백만원)

구 분	2024년 편성액	2025년 요구액	증 감
계	3,695	3,753	58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	500	500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780	338	△442
장학기금 확대	2,250	2,250	-
장학사업 추진	665	665	-

3) 내 용

-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338백만원)
-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500백만원)

⇒ 신규 추진사업이며, 2025년은 각 대학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2025년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을 (재)거창군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총 요구액은 3,753백만원으로,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장학기금 확대, 장학사업 추진에 지원하고자 함.
-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500백만원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임.
- 장학회 확대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 약 개 요

- ❖ 사업기간 : 2022. ~ 2026.
-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군 9,000 만 1,000)
 - 출연금 90억원(연 22.5억원 × 4년), 모금 10억원(연 2.5억원 × 4년)
- ❖ 사업내용 : (재)거창군장학회 장학기금 200억 달성(100억 → 200억)
- ❖ 추진방법 : 기본재산 100억원, 출연금 90억원, 모금 10억원
- ❖ 장학회 재산 현황

(2024. 6. 25. 기준 / 단위 : 원)

합 계	기본재산	보통재산	기부심사전	비 고
16,552,923,132	15,000,000,000	1,364,169,808	87,803,444	

○ 최근 3년간 출연 현황

(단위: 백만원)

합계	2022	2023	2024
7,589	665	3,229	3,695

○ 거창군장학회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비고
14,040	2,363	11,677	2023.12.31.기준

○ 거창군장학회 출연 근거

☐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근거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등록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 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국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 근거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조신설2023.6.28.)

⇒ 이번 제283회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임(의안번호 2024-146호)

○ 거창군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육비 비율은 0.94%로 채 1%가 되지 않음. 그마저도 유아 및 초중등교육 비중이 0.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평생교육 예산임.

○ 이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한국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학생인구 유지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 세수결손으로 인한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거창군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고정비용을 늘리는 것은 다른 분야의 지원사업에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정희]

① 거창아트갤러리 건립(건물의 신축)

1. 제안이유

-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1) 사 업 명 :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사업
- 2)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779번지 일원(정장공원 일원)
- 3)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간)
- 4) 사 업 비 : 8,823백만원(공사비 7,363백만원)
- 5) 주요내용 : 전시실, 수장고, 교육 및 체험공간 등 전시예술 향유를 위한 시설물 건립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사업명	토지소재지	신축규모	기준가격 (백만원)	비고
거창아트갤러리건립사업	거창읍 대평리 779번지 일원	연면적 : 1,504㎡ (지상 2층)	7,363	신축

② 유기농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1. 제안이유

- 남상면 월평리에 추진 중인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의 2단계 조성사업으로 모두농장(유기농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소비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유기농복합단지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 공급하고자 토지 매입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1) 사업명 : 유기농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
- 2)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45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4) 사업비 : 600백만원(군비 600) ※ 토지, 영농 보상비
- 5) 사업내용 : 모두농장 조성(임대형 스마트팜, 유기농 체험형 농장)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천원)	비고 (공시지가)
		소 재 지	지목	면적(㎡)		
		5필지		8,017.6	170,565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5	답	2,018.5	42,389	21,000/㎡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6	답	2,005.5	41,915	20,900/㎡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7	답	542.5	11,718	21,600/㎡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8	답	1,463.6	31,613	21,600/㎡
취득	토지	남상면 월평리 2249	답	1,987.5	42,930	21,600/㎡

③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1. 제안이유

- 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가중
- 유동인구 증가 등 따라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1) 사 업 명 :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
- 2) 위 치 : 거창읍 가지리 1331번지 등 6필지
- 3) 취득면적 : 토지 4,024㎡
- 4) 사업기간 : 2025 ~ 2026년(2년간)
- 5) 사 업 비 : 5,800백만원(도비 2,900백만원, 군비 2,900백만원)
- 취득비 : 4,200백만원, 공사비 : 1,600백만원
- 6) 사업내용 :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1식(150면)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취득가격 (감정평가)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024	4,197,032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1번지	주차장	3,037	3,167,591	2025. ~2026.	자주식 공영 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1-1번지	답	84	87,612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1-2번지	답	100	104,300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3-15번지	임야	286	298,298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25-8번지	답	496	517,328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336-14번지	답	21	21,903			

※ 기준가격 : 가감정평가 / 토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5조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① 거창아트갤러리 건립(건물의 신축)건은

- 거창아트갤러리는 거창읍 대평리 779번지 정장공원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에 전시실, 수장고,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구성됨.
- 이는, 지역 내 문화예술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의 재정 상황, 향후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립해야 할 것임.
- 또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지역 내 다양한 예술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하는 등 거창만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유사한 예로 신달자 문학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초 목적과는 달리 거창예술인의 집으로, 또,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찰되었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숙소로 활용되었으나, 2025년에는 신달자 문학관으로 다시 변모할 계획임.
- 덧붙여, 읍면 구석구석에 노후화돼 미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재 활용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등 ‘신축’에서 ‘재생’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② 유기농복합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건은

- 해당 토지 매입건은 남상면 월평리 2245번지 등 5필지 8,017m²를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과 유기농체험농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 추진하고 있는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1단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단계 사업으로, 스마트팜과 유기농 체험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1단계에서 조성하는 레스토랑, 판매장 등에 납품할 계획이며, 부지 매입비는 평당 230천원(영농보상비 포함) 정도 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1단계 조성사업

- 기 간 : 2022년 ~ 2026년 (5년간)
- 규 모 : 부지면적 31,887m²(건축연면적 3,100m²)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80억원(국비 9,000, 도비 2,700, 군비 6,300)
- 주요시설 : 에코힐링센터(레스토랑, 카페, 판매장, 체험장, 교육장 등)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2단계 조성사업

- 기 간 : 2025년 ~ 2026년 (2년간)
- 규 모 : 8,017㎡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45번지 외 5필지
- 사 업 비 : 12억원(군비) / 부지매입 6억원, 조성비 6억원
- 주요시설 : 유기농 체험농장,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텃밭분양 등

-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식량 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 유치에도 스마트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형 스마트팜과 유기농체험농장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③ 2025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건은

- 거창읍 가지리 1331번지 등 6필지, 4,024㎡를 매입하여 도비 29억원, 군비 29억원 등 총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자주식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차면수는 150대 임.
- 이 지역은 대형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 및 특정 시간대에 교통혼잡이 심각해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수년간 불편을 호소하는 곳으로
-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교통혼잡 해소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가. 제안이유

- 거창군 문화센터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며,
- (재)거창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거창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임.
- (재)거창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 문화복지 향유 기회확대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바 있으므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건물)

- 1)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김천리 216-5번지 등)
 - 2)연 면 적 : 4,582.31m²
 - 3)건축면적 : 2,658.48m²
 - 4)소 유 자 : 거창군
 - 5)사 업 비 : 13,160백만원
 - 6)사용·수익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7)허가대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거창군수)
- ※ 토지 : 15,820m²(소유자 거창군)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내역

◎ 사용료 감면(면제) : 159,855,551원

- 1) 건 물 : 1,897,911,855원(시가표준액)
- 2) 토 지 : 1,299,199,176원(공시지가 488,700원/m²)
- 3) 사용료 산출 : 3,197,111,031원 × 50/1,000(요율) = 159,855,551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거창문화센터를 (재)거창문화재단에서 3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 사용허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료 감면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거창문화재단은 군민의 높은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 전국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경남도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 거창문화센터, 야외공연장, 화장실 등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3년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이내 수익계약 방법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사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거창군이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거창문화재단에 무상 사용수익허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11.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1. 22.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가.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나.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 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426,125,000원
 - 2025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5년	1,260,212	1,426,125	1,426,125	-	-	1,426,125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10명, 기간제 4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거창문화재단 인건비와 경상경비 1,426,125천원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난해 대비 165,91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 사무처장, 문화사업 2단장, 단원 신규채용
- 인건비 상승률 반영
- 성과급 도입(21,000천원)
- 공공운영비 물가 상승 등이며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지원금액	976,000	1,154,610	1,260,212	1,426,125	재단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전년대비증감	증) 133,000	증) 178,610	증) 105,602	증) 165,913	
예산과목	출연금(306-01)				

○ 본 출연안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거창문화재단에 1,426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와 공석인 2단장에 연극전문가를 채용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사무처장, 문화사업 2단장, 단원 등을 채용할 계획으로 증가된 인건비와 성과급 도입으로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임.
- 따라서, 거창문화재단은 홍보마케팅, 공연기획 등 창의적인 문화 시책 및 문화사업을 발굴하여 군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바, 조례에서 규정된 문화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출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조 례 및 일 반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7
4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0
5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6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9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25
10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9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1. 22.

나. 발 의 자 :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

(신중양, 이재운, 김향란, 신미정, 최준규,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1. 22.

라.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신중양 의원)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안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화재대응 매뉴얼 배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소방기본법」 제2조의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1. 19. ~ 11. 25.(7일간)
 - 나) 예고결과: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최근 3년새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기자동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거창군의 경우 전용주차구역 89면, 충전시설 179기가 설치되어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취지, 시기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이 중요한 상황으로 질식 소화포 등 안전시설의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1. 22.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를 위하여 읍·면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읍면에 기금 지출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신설함(안 제4조)
- 1) 분임기금운용관: 읍장·면장
 - 2) 분임기금출납원: 읍·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 2) 「지방회계법」 제46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1. 8.~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4조에 불합리한 기금출납원 조항을 개정하고 분임기금은 용관을 읍·면장으로, 분임기금출납원을 읍·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재난 시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1. 22.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 국가정보원의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소관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1) 거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 정부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마련 지표대상 법령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11.~10. 3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에도 사이버보안이 강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전파, 서비스 거부(DDoS) 등으로부터 예방조치와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1. 22.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 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 6. 28.)됨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에 1천분의 23에서 1천분의 96까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로 위임된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별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36천만원 확보(국50%, 도15% 군35%)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1. 19.~11. 2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조례로 위임한 대행 수수료의 산정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과 동일

하게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1. 22.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 거창창포원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와 신축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창포원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정비하여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8조·제19조)
1) 휴원일, 키즈카페·북카페 운영시간
나. 창포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를 정함(안 제11조의2, 제25조, 별표 3)

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정함(안 제20조, 별표 1, 별표 2)

라. 입장료 등의 반환을 정함(안 제23조)

마. 창포원 활성화 지원을 정함(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8조의8·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9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창포원의 유료화를 위해 입장료와 주차료 등의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외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임.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보면 창포원, 주차장, 키즈카페, 자전거, 족욕체험장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입장료 등의 반환 규정도 신설하였음.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1. 22.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복농촌과장)

- 거창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직매장의 개설·운영, 위탁을
정함(안 제4조)
다.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정함(안 제5조)
1)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등에서 지역농산물을

- 구매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할인권 등 지원
- 라.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을 정함(안 제6조)
- 마.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조·제15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4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31~11.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제3조에서 거창군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거창군의 직거래 확대를 통해 영세소농의 소득증대를 비롯하여 유통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 개설 운영을 규정하였음.

- 제6조에서 농업인의 조직화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기획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밭농업 기반의 효과적 정비와 후계인력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거창군은 비교적 지역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1. 22.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업종별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1) 인상률: 5년간 매년 10퍼센트
2) 요금 현실화율 목표: 2029년 41.2퍼센트(2023년 32.84퍼센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수도법」 제38조
- 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4.02%에 그치고 있고 경상남도 13개 상수도 지방공기업 중 거창군은 12위인 상황으로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고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별표1의 업종별 요금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필요한 조치로 검토됨.

○ 경남 시·군별 상수도 요금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구 분	연간생산량 (천㎥)	연간부과량 (천㎥)	평균요금 (원/㎥)	평균원가 (원/㎥)	현실화율 (%)
전 국	6,980,891	6,016,692	727.96	985.38	73.88
경 상 남 도	400,963	312,413	880.11	1,331.28	66.11
통영시	16,538	13,226	1,056.34	1,175.19	89.89
김해시	67,921	53,051	1,017.14	1,245.86	81.64
양산시	46,362	35,929	925.94	1,174.78	78.82
진주시	55,962	40,876	650.75	879.08	74.03
사천시	16,696	13,586	1,051.38	1,497.88	70.19
창원시	119,137	97,288	792.6	1,213.01	65.34
거제시	28,508	22,437	883.26	1,380.06	64
고성군	5,785	4,967	1,107.29	2,201.10	50.31
함안군	9,895	6,852	1,129.95	2,298.91	49.15
창녕군	9,151	7,453	1,046.65	2,153.69	48.6
밀양시	13,285	8,681	967.36	2,616.29	36.97
거창군	6,597	5,508	761.97	2,240.04	34.02
합천군	5,127	2,559	902.7	3,522.88	25.62

※ 경상남도 13개 상수도 지방공기업 중 거창군 12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하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1. 22.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업종별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1) 인상률: 5년간 매년 15퍼센트
 - 2) 요금 현실화율 목표: 2029년 8.6퍼센트(2023년 5.46퍼센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하수도법」 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 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25.~11.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53%에 그치고 있고 경상남도 11개 하수도 지방공기업 중 거창군은 10위인 상황으로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고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필요한 조치로 검토됨.

○ 경남 시·군별 하수도 요금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구 분	하수처리량 (천㎥)	연간부과량 (천㎥)	평균요금 (원/㎥)	평균원가 (원/㎥)	현실화율 (%)
전 국	7,506,199	5,533,448	642.77	1,374.13	46.78
경 상 남 도	362,304	311,925	588.59	1,594.33	36.92
창원시	146,413	122,551	556.74	947.39	58.77
김해시	65,862	53,595	828.23	1,446.75	57.25
양산시	31,229	36,947	658.96	1,371.86	48.03
사천시	16,143	10,099	943.43	3,010.53	31.34
진주시	44,941	42,212	432.16	1,667.66	25.91
밀양시	12,296	8,060	846.49	4,658.11	18.17
거제시	15,587	14,844	421.58	2,707.91	15.57
통영시	10,976	10,917	235.72	1,700.10	13.87
고성군	3,696	2,604	365.67	5,504.06	6.64
거창군	8,922	5,326	207.03	3,741.70	5.53
창녕군	6,238	4,769	241.69	4,533.66	5.33

※ 경상남도 11개 하수도 지방공기업 중 거창군 10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1. 22.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 다.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 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출연기관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나.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진행하며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생산 공장으로서
- 다. 대상지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대여 사용 중임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건물)
 - 1)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103-10
 - 2) 건물면적 : 392m²

3) 소 유 자 : 거창군

4) 사 업 비 : 451백만원(기계설비 309, 건축물 138, 부대시설 등 4)

5) 사용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토 지 : 개인 토지(5,500천원/년, 소유주 : 진산 김치성)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내역

1) 사용료 감면(면제) : 5,272,400원

– 건 물 : 105,448,000원(시가표준액)

– 기계설비 : 내구연한 경과

※ 사용료 산출 : 105,448,000원×50/1,000(요율) = 5,272,400원

다.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주요 사용 내용

1) 신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기술이전을 위한 시험 생산, 기업체 신제품 개발·생산 지원

2) 거창화강석 품질 신뢰도 및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한 각종 검증, 분석업무 수행

3)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에 따른 시험서비스 제공 및 기업체 석재 품질시험업무 수행

4. 참고사항

가.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1

나. 사용허가 재산목록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의회 동의를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면제를 연장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진행하며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생산 공장으로서 대상지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대여 사용 중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1. 22.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1. 22.
다. 상정일자 :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일원 주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를 위해 기 조성된 『거창스포츠파크 부지의 거창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계획개요
- 1)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41번지 일원(양평근린공원)

2) 군관리계획 주요 변경 내용

- (공원시설 변경) 당초 79,496m²→변경 62,978m²(△16,518m²)
- (용도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A=16,518m²
- (체육시설 신설) 체육시설 신설, A=16,518m²

나. 변경사유

- 1) 양평근린공원 내 실외골프연습장은 2005년 최초결정 당시 면적 107,275m²로 조성 공원조성 계획 상 골프연습장으로 결정되었으나
- 2) 2017년 구역 면적이 79,056m²로 축소 변경되어 10만m² 미만의 근린공원에서는 세부시설로 실외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 3) 기존 실외골프연습장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실외골프연습장을 공원(양평근린공원)에서 제척하고 체육시설로 신설하여 관련 법에 적법하게 개선 하고자 함

다. 그간 추진 사항

- 1) 2024. 7.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
- 2) 2024. 11. :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체육시설사업소 → 도시건축과)

라. 향후 추진 계획

- 1) 2024. 11. : 주민의견 청취
- 2) 2024. 12. : 관계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3) 2025. 1. : 군관리계획 입안 신청(거창군 → 경남도)
- 4) 2025. 3.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참고사항

가.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 붙임참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공원 결정 변경안은 양평근린공원 구역면적이 2017년 축소 변경됨으로써 현행법상 양평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은 조성할 수 없는 시설이 됨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골프연습장을 제척하여 체육시설로 신설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을 보전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현재 추진중인 실외골프연습장 시설 개선과 향후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